

주안2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4. 3 ~ 4. 6(4일)
- 감사범위 : 2015. 5. 1. ~ 2018. 3. 31. 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반원 : 감사팀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여부
 -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 각종업무(서무,주민등록,민방위,청소 등) 추진실태

☐ 감사결과 내역

구 분	처분 현황 (건)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세입)	환급· 감액		
계	12	12	4	8	60	60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불임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 및 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주민자치

○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실시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워 크 쉵 행 사 개 요								주민자치 위원회 심의 의결
	일시	장소	참석 내용		주요내용	소요예산			
			예상 인원 (명)	대 상		1인 참가비	수강료 수입	추정 경비	
2015년	2015.6.3 (수)	충북괴산 (산막이 옛길)	130	프로그램 수강생, 주민자치 위원, 통장 , 자생단체위 원공무원	· 특강 실시 : 주 민 자 치 센 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사: 주민자치위원장) · 견학 등	15	기타 경비	7,500	2015.5.11
2016년	2016.5.19 (목)	충남부여 (낙화암)	200			15	//	8,940	2016.5.9
2017년	2017.11.9 (목)	충남보령 (개화 예술공원)	200			15	//	9,440	2017.10.23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리 회계담당자 미 지정 운영

(단위: 천원)

구 분	성 명	최 초 근무일	근무시간(월)		월평균 지급액	담당 업무
			출근횟수	근무시간		
간 사	박○○ ¹⁾	2013.08.11	10	비상근	300	· 자치센터 전반적 관리 · 수강료 관리(수입 및 지출)
자 원 봉사자	권○○	2015.10.26	25	125	550	· 수강료 및 수강생 관리 · 출입문 개·폐 · 프로그램실 등 청소
	신○○	2015.01.01	25	125	550	
	김○○	2016.08.01	25	125	550	

※ 붙임1: 주안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인력종사자 활용 현황

[지적사항]

-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7항에 의하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년 2회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8항에서는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운영경비의 집행)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 사용의 범위로 1. 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 3.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4. 센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5. 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비용 6.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 사업으로 조례 제5조(기능)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 다만, 2015. 12. 21. 동 규칙 개정 전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외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동 조례 제10조 제8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주안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3. 8. 11.~ 현재까지 별도의 회계담당자 지정 절차 없이 위원회 간사(박○○)이 수강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표1]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행사 지원 사항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록회원들 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 자치센터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5년~2017년 주안2동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실시계획」을 수립 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 사항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 주안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13. 8.11. ~ 2018. 4. 1. 현재

제7호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5조(기능)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또는 필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매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행사를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1인당 참가비 15,000원을 회비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음식봉사단), 인솔공무원은 회비를 면제시킨 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수강생 참가비 수납액을 제외하고 차량임차료 및 교통비, 기타 경비 등을 명목으로 계상하여 2015년 5,379천원, 2016년 6,187천원, 2017년 3,857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행사 지원 내역

(단위: 원)

연도	워크숍 인원(명)				재원 및 지출금액				정산 여부	비고 (장소)
	계 획	보험 가입	참석자		참가비 (1인/15,000)	수강료 수입	계	1인당 금액		
			회비 납부	회비 면제						
2015년	130	142	119	23	1,785,000	5,379,060	7,164,060	50,451	미실시	충북괴산
2016년	200	183	158	25	2,370,000	6,187,570	8,557,570	46,762	미실시	충남부여
2017년	200	132	108	24	1,620,000	3,857,250	5,477,250	41,494	미실시	충남보령
합계	530	457	385	72	5,775,000	15,423,880	21,198,880			

- 또한, [표2] 워크숍 행사관련 물품 구입 및 차량(버스)을 임차하면서 1번, 2번, 4번의 경우에는 실제 구입품목(꽃게, 김밥)과 상이한 종목 업체의 간이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며, 3번, 4번 전세버스 임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에 소재한 지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7년 2회에 걸쳐 남구 지역업체가 아닌 충남 ○○시 소재 업체 ○○관광(주)과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2] 워크숍 행사관련 물품 구입 등 부정적 지출 내역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구입(임차) 현황			거 래 처		
		지출금액	구입품목	수량	상 호	소재지	종목
1	2015. 6. 4	900,000	꽃게	65kg	○○닭강정	남구 주안7동	닭강정
2	2015. 6. 5	225,000	김밥	150개	○○○할인마트	남구 주안2동	생필품
3	2015. 6. 10	2,420,800	버스(45인승)	4대	○○관광	충남	운수업
4	2016. 5. 20	313,500	김밥	209개	○○○할인마트	남구 주안2동	생필품
5	2017. 11. 10	2,145,000	버스(45인승)	3대	○○관광	충남	운수업

※ 붙임2: 주안2동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실시 현황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시정]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강료 징수·관리·지출 등 일괄 운영을 위한 회계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토록 하시고,
2.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자는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회계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직권조치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1.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수조사 명부 관리 등 소홀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야 하고, 일제정리에 따른 전수조사는 전 세대에 대한 세대별 명부를 작성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주안2동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공무원과 통장을 합동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1차 사실조사로 해당 통장이 전 세대 명부에 세대주(원)에 확인 서명을 받고,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담당공무원이 2차 개별조사를 실시한 후 직권조치 등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다.

[표1]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

연도	대상통	대상세대수	사실조사 기간	최고 등 직권조치 기간	비고
2017년	41통	10,455	1.15~2.25	2.26~3.30	
2018년	41통	10,238	1.16~2.19	2.20~3.24	

- 위 계획에 따라 1차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명부를 해당 통장에게 배부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그러면 사실조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어 기한내 명부가 제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일제정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세대 명부에는 세대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입일자, 세대원 수 등 주민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유출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그럼에도, 주안2동에서는 [표2]와 같이 2017년, 2018년 20통에 대한 사실조사 세대 명부를 감사기간 중인 2018.4.4. 회수하고, 세대주 확인 서명도 없는 등 주민 등록 일제정리 세대명부 관리 및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사실조사 세대 명부 부적정 관리 현황

연도	통	세대수	통장 배부일	조사완료 제출기한	회수일	회수지연일	비고
2017	20통	277	17.01.10.	2017.02.17.	2018.04.04.	411일	
2018	20통	274	18.01.10.	2018.02.05.	2018.04.04.	58일	

2. 주민등록 직권조치 지연 처리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가 공고일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공고일 익일에 직권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최고공고 기간 중에 의사표시(며칠 후 전입신고 등)를 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재조사를 하거나 의사 표시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직권조치를 유보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 주안2동에서는 [표3]과 같이 김○○ 외 2명을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하면서 직권조치 유보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공고일 익일로 부터 11일이 지난 후에 직권조치 하였다.

[표3] 직권조치 처리 현황

구분	대상자	최고기간	공고기간	직권 조치일	공고일 익일	지연처리일	비고
무단전출	김○○외 2명	16.06.01~ 16.06.08	16.06.10~ 16.06.17	2016.07.01.	2016.06.20	11일	6.18(토) 6.19(일)

3. 주민등록 최고 절차 부적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문서의 성립 및 효력의 발생은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 제3항 [별표3]에는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및 사실조사는 동장의 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 등을 위해서는 사실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직권조치의 경우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주안2동에서는 [표4]와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를 결재권자(동장)의 결재 없이 대상자들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고 직권조치 절차를 진행하였다.

[표4] 주민등록 직권조치 관련 문서 결재 현황

연번	직권 조치	대상자	최고문서 결재	공고문서 결재	직권조치 문서 결재	비고
1	무단전출	유○○ 외 1명	없음	17.11.17.	17.11.27.	
2	무단전출	김○○ 외 1명	없음	17.06.01.	-	전출로 절차 중단
3	무단전출	이○○	없음	17.05.26.	17.06.02.	
4	무단전출	왕○○	없음	17.05.31.	17.06.12.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주의]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직권조치 시 관련규정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하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부여는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 표시를 하고 담당주무가 직접 “번호부여대장”의 확인란에 날인하고 “번호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 우측상단에 소인하여야 한다.
- “번호부여대장”은 반드시 생년월일,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번호대장에 등재하여 등재 누락으로 인한 중복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번호 부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주안2동에서는 [표]와 같이 출생자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등재 사항 기록을 누락하였다.

[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재 누락 현황

연도	성명	부여번호	번호부여일	부여사유	비고
2017	박○○	-	2017.03.30.	출생	
2017	장○○	-	2017.04.07.	출생	
2016	이○○	-	2016.05.13.	출생	
2016	안○○	-	2016.03.14.	출생	
2016	최○○	-	2016.09.09.	출생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시정] 기재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정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지연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구청장 등으로부터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분실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분실 재발급을 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에 등재하여 파기하여야 하고, 재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주안2동에서는 [표]와 같이 인천 남구청에서 2017.5.18. 송부한 습득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약 1개월을 지체하여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등재 처리하였다.

[표] 습득주민등록증 처리 지연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송부기관	송부일	수령일	처리일	비고
1	김○○	-	인천 남구청	2017.05.18.	2017.05.23	2017.06.20.	
2	장○○	-	인천 남구청	2017.05.18.	2017.05.23	2017.06.26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주의] 관련규정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사항 미 기록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자에 대하여 발급을 하며, 만 17세가 되는 달에 해당 월의 신규 17세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산 기록하여야 한다.

<예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2016. 1. 20.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발급기간 : 2016. 2. 1 ~ 2017. 1. 31. 수령자 ○○○)

<예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공고한 경우

2016. 1. 30. 주민등록증 발급공고
발급기간 : 2016. 2. 1 ~ 2017. 1. 31.
사 유 :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

-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주민등록증 지연 발급시 과태료 부과에 근거 자료가 되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주안2동에서는 [표]와 같이 2016. 1월부터 2018. 3월까지 신규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 452명에게 발급 통지를 하고 통지서 교부 등에 대한 기록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현황

연도	발급대상	대상인원	발급통지 교부	미교부자 공고	비고
계		452	448	4	
2016년	1999년생	215	215	-	
2017년	2000년생	204	204	-	
2018년	2001년생	33	29	4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주의] 관련규정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자체교육 인정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민방위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같음하고,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면 동장은 제출된 자체교육 확인서에 의해 민방위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로 관리하여야 하나 주안2동에서 [표]와 같이 관련 증빙자료 없이 이○○ 등 5명을 교육훈련에 참석한 자로 인정하였다.

[표] 자체교육 인정 부적정 현황

연번	성명	민방위대	생년월일	인정사유	교육훈련 인정 연도	비고
1	이○○	6통 민방위대	-	경비원	2015, 2016	
2	김○○	34통 민방위대	-	경비원	2015, 2017	
3	서○○	32통 민방위대	-	시내외 버스운전자	2015, 2016	
4	이○○	5통 민방위대	-	시내외 버스운전자	2015	
5	오○○	39통 민방위대	-	경비원	2015, 2016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주의] 관련 규정 준수하여 민방위 대원 교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반장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재정법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5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③항에 의하면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4.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 5. 공무원여비
- 그러나, 주안2동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4회에 걸쳐 반장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명절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표] 반장 명절상여금 지급현황

지급일	적 요	지급방법	지급채주	지급금액(원)
2015.09.18	2015년 추석 절 반장상여금 지급	현금	반장 201명	5,025,000
2016.02.03	2016년 설 명절 반장상여금 지급	현금	반장 193명	4,825,000
2016.09.08	2016년 추석 명절 반장상여금 지급	현금	반장 198명	4,950,000
2017.01.23	2017년 설 반장 상여금 지급	현금	반장 194명	4,850,000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주의]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회계지출 증빙서류 첨부 부적정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회계

-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항에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 그러나, 주안2동에서는 2015. 8월부터 2018.3월까지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7회는 지출결의서 첨부서류에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인 「통장회의 참석 서명부」를 첨부하지 않고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2회는 지출결의서에 통장회의 참석 서명부 사본을 첨부하여 지출하였다.
-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32회에 걸쳐 지출결의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부 사본을 첨부하여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준수하시어 예산집행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회계

-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 9조(지방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 체결시에는 지역개발공채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건설공사 도급계약·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2/100를 대금 청구시에 소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표상의 정율제 산정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5,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주안2동에서는 [표] 와 같이 「동청사 LED 등기구 교체」에 따른 대금 청구서 접수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역개발공채 구입 부적정 현황

계약일자	계약명	금액(원)	비고
2016.01.20	동청사 LED 등기구 교체	12,640,000	적정 공채 구입액 250,000원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주의] 계약 및 대금 청구 시 관련규정 준수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회계

-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1조 및 18조에 따르면 출장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 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 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주안2동에서는 [표] 와 같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 근무상황부에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미사용으로 부주의하게 기재하였고, 여비 지급 시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2017.11월 6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여비를 지출하였다.

[표] 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연 번	근 무 상 황 부							차량운행일지(39버2121)		
	이름	출장일시	출장기간	총출장 시간	공용차량 사용여부	출장목적	여비 지급(원)	운전자	운행 시작	운행 종료
1	최○○	2017.11.01	09:10~11:00	1시간50분	미사용	복지차량 전달식 참석	10,000	최○○	09:10	11:00
2	최○○	2017.11.07	14:00~15:00	1시간	미사용	홀몸어르신 이불 전달	10,000	최○○	14:00	15:00
3	최○○	2017.11.08	15:00~17:00	1시간	미사용	홀몸어르신 이불 전달	10,000	최○○	15:00	17:00
4	최○○	2017.11.13	15:00~18:00	3시간	미사용	사례관리대상 자 가정방문	10,000	최○○	15:00	16:00
5	최○○	2017.11.14	13:00~14:00	1시간	미사용	지역아동센터후 원 개발사업 행사참석	10,000	최○○	13:30	15:30
6	최○○	2017.11.21	15:10~17:00	1시간50분	미사용	김장김치행사 참석	10,000	최○○	15:00	17:00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시정] 착오 지급된 여비는 회수 조치 하시고, 관련 규정 준수하여 여비 집행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말소된 장애인 복지카드 미 회수(미 폐기)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장애인등록법 제 32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하면 같은 법 제 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함.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해야하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같은 법 제 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증 반환통보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서식)을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주안2동에서는 장애인등록카드가 말소 신○○ 등 3명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감사실 현재까지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말소된 장애인복지카드 미회수(미폐기)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말소/정지일자	말소/정지 사유	비고
1	신○○	-	2016.06.15	사망말소	
2	유○○	-	2017.03.15	등급 외 말소	
3	한○○	-	2015.12.10	사망말소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장애인복지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미회수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소홀

기 관 명 주안2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지급된 급여의 관리사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율에 맡겨야 하나(사적자치의 원칙),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 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의 수급자 단독가구(이들로만 구성된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자로 하여금 급여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분(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주안2동에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 서류 대부분이 통장사본만 첨부되어 있고 급여관리자의 급여 관리 실태 점검 대상인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으며, [표]와 같이 급여관리자의 점검을 누락하는 등 의사무능(미약)자의 급여관리 실태 확인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의사무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확인 소홀

연 번	대상자	생년 월일	등록유형	급여관리자			소홀현황
				이름	관계	지정일	
1	차○○		-	차○○	친인척	2012.4.30	2015년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2	손○○		지적장애	손○○	부양의무자	2015.01.29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조치할 사항 주안2동장은

[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